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2294
-----------	------

2021년 4월 2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성중기 의원 외 13명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4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4월 2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성중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
-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교통안전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4. 9. ~ 2021. 4. 16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제출의견 : 원안 동의
 -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방법과

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 교통운영과에서 교육과정을 운영
중에 있으므로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, 어린이들은 등·하교 시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 되어 있는 만큼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¹⁾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
- 실제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약 1,740

1) 스몸비 키즈(smart phone zombie kids)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아이들을 이르는 말,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://opendict.korean.go.kr/dictionary/view?sense_no=1386781

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.1%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

〈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〉

구 분		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	지정개소	-	1,730	1,733	1,730	1,760	1,750
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	발생(건)	430	96	81	77	114	62
	사망(명)	6	2	1	1	2	0
	중상(명)	147	29	27	23	28	21

- 현행 조례²⁾에서도 시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및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명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
- 서울수도 ‘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’³⁾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사고 다수 발생지역에 대한 시·구·경찰 합동 특별 계도를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초·중·고등학생·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교재(DVD) 제작·배포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

2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3) ‘보행안전 개선 종합계획’ 보행정책과-14249(2020. 10. 29.)

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

- 한편,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들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및 자전거 통학생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교통안전교육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
2.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
3.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<u>교통안전교육</u>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</u> -----.</p> <p>1. <u>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</u></p> <p>2. <u>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 사고 예방교육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